



관공사의 안전관리비계상에 있어 최초 예가작성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억이고 수급인(시공사)은 그 공사를 낙찰을 70%에 도급받았으며, 도급계약서 상 안전관리비가 7천만원이라면 수급인이 사용해야 할 법적 안전관리비는 어느것 인지요.

- 1억원(예가작성시 계상) - 7천만원(수급인 낙찰율 적용)

또한 법적 안전관리비가 1억원이라면 차액 3천만원은 발주처에게 계상 요구(증액)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도급계약서상의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에서 낙찰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면 그 금액을 법적 안전관리비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사용할 전자계산기등 사무용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안전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여 안전관리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용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준도로의 확,포장을 위한 도로우회시 관할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발주처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 시공사는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7조 제1항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훈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승인과 관계 없이 위의 기준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현장에서 구입한 각종 안전시설재(E/V난간대, 발코니 난간대, 추락방지망, 방호선반용 발판 등)를 전용 빌음에 따라 이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또한 향후 실시될 각종 안전행사(안전기원제, 안전점검의날 등)시 근로자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품(수건, 시계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의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 중 구입비에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귀 현장에서 향후 실시될 각종 안전행사(안전기원제, 안전점검의 날 등)시에 수건이나 시계 등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귀 현장의 자축 및 광고적인 측면에서 배포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각종 안전행사에 참여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의 성격이나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제작·배포된다면 동 비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항목으로서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들이 대기업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보수공사현장에서 토목기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4월초 일요일 아침에 회사차량을 이용 혼자 운전하여 현장사무실로 출근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평일이 아닌 일요일에 회사의 명예(묵시적 명) 의하여 출근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사무실로 출근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출근행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차량을 사용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장사무실로 가는 과정이 출근중이 아닌 출장중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근무 중에 빗자루로 회사 앞마당을 쓸다가 그곳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의 차에 바치어 넘어져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사는 목격자를 내세워 제가 차에 치인게 아니라 넘어진 다음에 후진하던 그 기사의 차(탑차)의 밑으로 기어들어 갔다고 억지를 쓰고 있는 중이라 산재보험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차는 회사의 차가 아니라 지입기사의 차이며 근무 중에 영업장내에서 난 사고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산재보험은 업무수행중이거나 사고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닌 재해로서 작업준비 중 작업 마무리 중 등 여려 요건이 판단요소가 되며, 회사마당을 청소하는 행위는 당연히 업무와 인과 관계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위 중 지입차에 부딪힌 경우는 지입차의 불법여부나 부주의에 상관 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설사 중대한 과실로 후진하는 차에 부딪혔다 해도 산재보상은 100% 받을 수 있습니다. ☺

## 5월호 내용 정정

5월호 내용 중 공사금액 1000억 이상 현장으로 분리 빌주된 통신공사(100억 미만)는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어 안전순찰 및 시설관리, 일일교육을 전담하는 안전관리 보조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별표2중 항목 1)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게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보조원은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100억 미만 즉,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의 보조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의 안전관리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